

의안번호	2204211
의 회 인	손명수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계번호	24B30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제1항 단서신설 (실태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제1항). <u>다만,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단서 신설)</u>	재량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을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 추계대상이 불확정적이고, 연 1회 이상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의 내용과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동법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기와 동법의 시설물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설물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제8조제2항¹⁾, 제10조제1항²⁾ 및 제28조제2항³⁾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 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로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3)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시설물 합계	소계	159,847	32,922	4,922	490	618	82,380
	1종	11,101	4,877	1,870	124	80	3,077
	2종	97,385	7,515	2,212	366	538	66,151
	3종	51,361	20,530	840	0	0	13,152
중앙행정기관	소계	50,864	14,747	2,859	314	591	11,510
	1종	4,815	3,360	1,010	75	76	96
	2종	17,640	4,547	1,455	239	515	3,327
	3종	28,409	6,840	394	0	0	8,087
지방자치단체	소계	50,864	14,747	2,063	176	27	69,477
	1종	4,815	3,360	860	49	4	2,954
	2종	17,640	4,547	757	127	23	62,104
	3종	28,409	6,840	446	0	0	4,419
구분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기타
시설물 합계	소계	6,733	2,182	3,955	4,463	40	480
	1종	570	470	0	0	0	0
	2종	6,163	1,712	3,309	4,463	40	0
	3종	0	0	646	0	0	480
중앙행정기관	소계	2,225	69	2,061	3,676	7	42
	1종	136	58	0	0	0	0
	2종	2,089	11	1,449	3,676	7	0
	3종	0	0	612	0	0	42
지방자치단체	소계	4,508	2,113	1,894	787	33	438
	1종	434	412	0	0	0	0
	2종	4,074	1,701	1,860	787	33	0
	3종	0	0	34	0	0	438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현황」